

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

의안 번호	(1) 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. 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『안산시 위원회 통·폐합 정비계획』에 따라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, 안산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,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을 통·폐합하여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「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」의 구성·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.

□ 주요내용

-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3조).
-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무내용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사항 등을 규정함(안 제7조).

□ 제정조례안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(지역위원회), 제12조(지역위원회기능), 제75조(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·운영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(안전관리전문기관)
-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(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)
-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(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8.5.22~2008.5.31.(10일간)

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,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(기능)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검토·협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에 관한 사항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5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술적 자문에 관한 사항
3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조제5항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
 2. 건축·토목·전기·가스·기계 및 소방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
 3. 안전관리·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4. 안전관리·방재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
 5. 안산시 소속 공무원
-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 별로 개최

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분과위원회 회의(이하 ‘회의’ 라한다)는 분과위원회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7조(분과위원회) ①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별 위원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안전관리 분과위원회
2. 안전관리자문단 분과위원회
3.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분과위원회

- ②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.
- ③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조사·연구 등)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가·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조사·연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,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간사 등)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별로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3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
4.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
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제12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,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폐지 등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, 안산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,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,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촉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장 구분 “제1장 총칙”, “제2장 안전관리위원회”, “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”, “제4장 안전관리자문단”을 삭제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안산시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의 확립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부터 제13조까지,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를 삭제한다.

소관 실·과		재난관리과
임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재난관리과장 한상철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재난예방담당 안동준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모경대 (행정 2119)

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71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9. 22.
제 안 자 : 도시건설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소위원회로 변경하고, 인용조문 및 자구수정을 함.

2. 주 요 골자

- 인용조문 및 문구를 수정함(안 제1조).
-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수정함(안 제6조, 제7조, 제10조).
-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「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」의 제명을 「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수정함(안 부칙 제4조).

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”를 “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분과위원회별”을 “소위원회별”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“분과위원회회의”를 “소위원회회의”로, “분과위원회”를 “소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 조명을 “분과위원회”에서 “소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본문 중 “분과위원회”를 “소위원회”로, “분과별”을 “소위원회별”로 하고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“분과위원회”를 “소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제2항 중 “분과위원”을 “소위원”으로, “분과위원장”을 “소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“분과위원회”를 “소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분과위원회별”을 “소위원회별”로 한다.

부칙 제4조의 “「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” 다음에 “제명을 「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한다”를 삽입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 관리실무위원회,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, 「자연재 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</p> <p>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<u>분과위원회별로</u>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 <u>분과위원회회의</u>(이하 ‘회의’라 한다)는 <u>분과위원회</u>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회의) ① ----- ----- <u>소위원회별</u> ----- -----. ② <u>소위원회회의</u> ----- ----- <u>소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7조(분과위원회) ①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<u>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별 위원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전관리 <u>분과위원회</u> 2. 안전관리자문단 <u>분과위원회</u> 3. 사전재해영향성검토 <u>분과위원회</u> <p>② <u>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.</u></p> <p>③ <u>분과위원회</u>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7조(소위원회) ① ----- ----- <u>소위원회</u> ----- <u>소위원회별</u> ----- -----. 1. ----- <u>소위원회</u> 2. ----- <u>소위원회</u> 3. ----- <u>소위원회</u> ② <u>소위원</u> ----- ----- <u>소위원장</u> ----- -----. ③ <u>소위원회</u> ----- -----.</p>

원 안	수 정 안
<p>제10조(간사 등)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<u>분과위원회별로</u>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</p>	<p>제10조(간사 등) ----- ----- <u>소위원회별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부 칙</p>	<p>부 칙</p>
<p>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	<p>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----- ----- -----</p>
<p><u>〈삽입〉</u></p>	<p><u>제명을 「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한다.</u></p>
<p>장 구분 “제1장 총칙”, “제2장 안전관리위원회”, “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”, “제4장 안전관리자문단”을 삭제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의 확립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부터 제13조까지,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를 삭제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